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강 남 구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과업불이행에 대한책임 확보)

1.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확보를 위해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담보금으로 예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업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비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용역 근무자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규정을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8시간내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② 용역근무자가 이해당사자와 결탁 등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③ 용역근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제1항의 과업 불이행에 따른 용역비 감액 및 계약 해지 기준은 각 호와 같다.
(단, 월 발생건수는 월별 용역비 지급기간에 대한 건수임)

- ① 월1회 발생시 : 월 용역비 지급 총액에서 5%감액
- ② 월2회 발생시 : 월 용역비 지급 총액에서 10%감액
- ③ 월3회 발생시 :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수
- ④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의 결탁 등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액의 환수와 고발 조치

제2조(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

- 1. 용역근무자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용역업체 장비로 정비 상황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다
- 2. 용역수행으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손해 발생시에는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도 감독 등)

- 1. 용역업체는 용역근무자를 용역업체에 정규직원임을 증명하는 사원확인증명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용역근무자는 매일 업무개시 10분전까지 해당과에 출근하여 과업지시서를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 3. 용역근무자는 우리구 작업지시에 의거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단속공무원의 보호)

1. 계약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구 단속직원의 모든 보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장 근무수당)

1. 연장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자에 한하여 정산 지급한다.

제6조(기타)

1. 2006년 강남구민간위탁및관리에관한조례 개정시 단위사업별 개별 계약 조례에 따르며 강남구의 요구에 의거 차후 갱신할 수 있다
2. 강남구는 현재 확보된 E-Mail list 또는 강남구 Panel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반기마다 실시하여 인센티브제 또는 페널티제를 시행할 수 있다
3. 인센티브와 페널티제에 따른 구체적인 상벌규정은 강남구의 주민만족도 평가제 시행계획에 따른다
4. 본 약정 사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강남구청 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구청업무지원)

1. 계약자는 불법광고물 철거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